

학생부종합전형 입시공정관리위원회규정(개정 2014.06.24)

제 정 2012.07.
개 정 2014.0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 입시전형의 공정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학생부종합전형입시공정관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무) ①위원회는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, 공정성 관리를 위해 외부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
②위원장은 입학취업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또한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입학사정관제 모집 시기에 위촉하여 해당입학 전형이 종료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입학사정관제 입시전형의 공정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.
- 2. 입학사정관제 입시전형 주요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.
- 3. 기타 입학사정관제 입시공정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.

제6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사정관실에서 관장한다.

제7조(준용)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중 제목과 제1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.